

변환 주의사항

-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(pghd)가 단순화되었습니다.

머리말 【붙임3】

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 신청서(온라인 입력)				
1. 수행기관 현황				
기관 현황	기 관 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담당자	성 명		전화번호	() -
	부서/직책		E-mail	@
2. 수행기관 신청분야				
과제번 호		기술분야		
		지원사업국가		
신청유 형	지원유형	세부유형		
3. 지원기업 현황(지정과제 관련 사항)				
기업 현황	과제번호		대상제품	
	기 업 명		대표자명	
4. 참여 연구원				
연구원 구분	성명	기술분야	전화번호	이메일
책임연구원				

연구원				
연구원				
연구원				
연구원				
연구보조원				

※ 첨부서류(파일업로드) 1. 【붙임4-1】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제안서(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)
--

지원사업 비용 산출내역서

구 분		금 액(원)	월단가㉠ (원)	투입율 (%)	투입기간 (개월)	비고
비 목						
인건비	책임연구 원(성명)	7,567,456	기재요령 참조	40	3	
	연 구 원 (성명)	5,802,624	기재요령 참조	50	3	
	연 구 원 (성명)		기재요령 참조	50	3	
	연 구 원 (성명)		기재요령 참조	50	3	
	연 구 원 (성명)		기재요령 참조	50	3	
	연 구 원 (성명)		기재요령 참조	50	3	
	연구보조 원(성명)	3,878,858	기재요령 참조	10	3	

	연구보조 원(성명)		기재요령 참조	10	3	
①소계						
비 목		금 액	비 고			
경비	자문비	0	해외대리인 자문비			
	유인물비	150,000	회계법인 위탁정산 비용			
	기타	0	기타비용(일부 수행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 등)			
②소계						
③합계(①+②)						
④일반관리비(③×6% 이하)			(③합계 6% 이하에서 예상 총계에 맞출 수 있도록 기재)			
⑤총원가						
⑥부가세(⑤×10%)			⑤총원가*10%			
⑦현금 총계(과제비)						
⑧지원기업 현물부담			총사업비에서 중기업 10%, 소기업·중견기업 20%			
총 사업비(⑦+⑧)						

기재요령		
○ 회색 숫자는 예시적 기재임 ○ ㉗의 월급여는 「당해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)를 기준으로 적용 ○ 연구원 등급은 전문기관 등록시 등록된 등급과 일치하여야 하나 책임연구원 등급이라도 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(과제당 1명만 책임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) ○ 투입인력 중 국내외 특허 심판·소송 대리권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투입필요 ○ 연구보조원(전체)은 그 인건비가 총인건비의 20% 이하로만 투입 가능		

- 위 인력이 동기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지원사업에도 투입한 경우 그 인력의 총투입비율은 100%를 넘을 수 없음
- 경비 중 위탁정산수수료(필수)는 유인물비로 계상하며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만 진행해야 함, 위탁정산 수수료 금액은 공고문에 따름

지원사업 신청 동의서(수행기관)

당 기관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

-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-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·외부감사에 당 기관의 제안 및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(이하, '지원사업' 이라 함)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
-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한 사항의 투입인력·투입기간·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관리·감독·사후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임
-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(변경 포함)한 사항의 투입인력·투입기간·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- 당 기관은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,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·간담회 참석,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전 포기, 협약 후 해제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- 당 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,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 가능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-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, 지원사업 금액 결정,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
- 당 기관은 당 기관이 수행한 지원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평가 및 등급화한 결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

-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동일기간내 동일인력의 투입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치에 동의함
- 당 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, 부당거래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지식재산처, 변리사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
- 당 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,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임